

제 1371 호  
1987. 8.14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문관  
 편집인: 장영관 김성환  
 전화: 731-5111-3  
 인쇄: 서울특별시 통합발간실  
 전화: 735-3337

<공보관선 보안용>

# 시 보

## 차 례

◎ 고 사	
제 55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일시계획인가	3
제 556 호: 배지고기 열등가격	4
◎ 공 고	
제 488 호: 전기공사업면허취소	4
제 490 호: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변경결정(폐지)	5
제 493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및 관세도면 공람	5
제 495 호: 재개발사업(을지로2가구역제 6지구)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7
제 497 호: 전기공사업제 영업장지 처분	8

(이면계속)

상										
하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500 호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동무 ..... 9

㉔ 구 공 고

강서구제 60 호 : 특정연사용기자재 사용업소 행정처분 ..... 10

㉕ 예 규

제 488 호 : 동상, 기념비 건립준비기준에 관한 규정 ..... 10

제 489 호 : 서울특별시 사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시행 계획 ..... 13

㉖ 사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5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사업(도로) 동대문구 중화동 21-3호-21-5호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421호('87. 7. 2)로 실시계획 공람공고울 한 바
2.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이틀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책관

제인에게 보인다.

1987. 7. 14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21-7의 4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 중화동 21-3호-21-5호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도로건설: 폭 6m 길이 87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다.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작 공: 인가후 3일 이내  
 ◦준공예정일: '88.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 )	면 적 ( )	실 제 이 용 상 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 자의 의 리 명 세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중화동 21-7	대	190㎡	190㎡	190㎡	중화동 21	영 일 봉	
						24	이 용 한	
2	" 21-8	전	111㎡	111㎡	111㎡	" 20	최 공 식	
3	" 23-4	대	7㎡	7㎡	7㎡	" 84	신 삼 숙	
4	" 22-10	"	30㎡	30㎡	30㎡	" 34	이 두 문	
5	" 34-8	"	7㎡	7㎡	7㎡	" 34-1	김 종 철	

울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불건 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 ( )	실재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설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설명	
1	21-3	주택	세멘트벽돌과잡	6개	주택	중화1동24	이용한	
2	21-3	"	"	16개	"	"	이용한	
3	21-3	"	"	2개	"	"	이용한	
4	21-3	"	"	30개	"	"	이용한	
5	23-2	"	"	14개	"	중화1동84	신상속	

◎서울특별시고시제 556 호

돼지고기 연동 가격 고시

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  
행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 제  
85-47 호, '85. 8.22)에 의하여 시  
울특별시외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8.14

서울특별시 장

1. 돼지고기 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500g당) 1,400 원

2. 시행일: '87.8.9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88 호

전기공사업법 제31조1호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법 면허를 취  
소처분 하였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7. 8.14

서울특별시 장

다 음

연회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취소일자	비 고
1246	오 경 전 설	차양동 219-35	임길자	'87.8	동법 31조1항
819	동 산 전 기	능동 93-2	유중열	"	"
350	동해중전기(주)	성수2가 277-138	곽윤근	"	"
464	신 흥 전 기(주)	성수2가 269-6	신준홍	"	"
1037	삼우건설공사	하왕실리 966-14	윤치상	"	"
877	원엘지니어링	상왕실리 9-2	장락기	"	"

<p><b>◎서울특별시공고제 490 호</b></p> <p>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운동장) 결정 및 변경결정(폐지)</p> <p>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아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운동장)결정 및 변경결정(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제 14 조의 2 의</p>		<p>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하고 야맹장소에서 14 일간 공람한다.</p> <p>1987. 8. 14.</p> <p>서울특별시장</p> <p>공 랑 개 요</p> <p>가. 공람기간: '87.8.11 ~ '87.8.25</p> <p>나. 공람장소: 성북구청 도시경비과</p>		
공 랑 개 요 (도시계획안)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규 모	비 고
도 로	폐 지	정릉동 640-29, 640-52	B = 6 m, L = 50 m	
"	"	석관동 198-1, 203	B = 8 m, L = 100 m B = 6 m, L = 130 m	
"	신 설	돈암동 85-9, 정릉동 559-33	B = 6 m, L = 240 m	
"	"	석관동 133-42, 384-10	B = 10 m, L = 45 m	
학 교	폐 지	중앙동산 2-27	28,800 평 - 0	
운동장	추 가 지정	"	중 28,800 평	당초 82,600 평 적 111,600 평
<p><b>◎서울특별시공고제 493 호</b></p> <p>공공하수도사업공고및관계도면공람</p> <p>1. 하수도법제 6 조에 의거 서대문구청도록 30345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가 설치(변경)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제 9 조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통람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록과여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p> <p>1987. 8. 14.</p> <p>서울특별시장</p>		

인가번호	공 사 명	위 치	사용계시 년 월 일
<p>공 랑 개 요                      가. 사용계시년월일: 내역참조                      나. 배수구역: 하수관망도참조(서대                      문구청 토목과비치: 도면생략)                      다.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p>		<p>의 위치: 서대문구청토목과 비치                      라.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                      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 합류식                      마. 공람기간: '87.8 ~ 8.30</p>	
1	북아현 2 동 216 일대 하수도공사	북아현동 216, 159, 156	'87. 6. 30
2	북아현동 174-172 일대 "	북아현동 174-172	'87. 6. 30
3	대현동 104 의 37 일대 "	대현동 27, 37	'87. 6. 30
4	홍은동 401 의 1 개소 "	홍은동 401, 340, 421	'87. 6. 30
5	북가좌동 119-136 "	북가좌동 119, 136, 384	'87. 4. 30
6	모래내시각주변 하수도	남가좌동 291, 291	'87. 6. 30
7	남가좌동 145 의 7 개소 "	남가좌동 124, 145, 200, 339, 216, 132, 198, 333	'87. 6. 30
8	남가좌동 352 의 8 개소	남가좌동 274, 269, 224, 352, 175	'87. 6. 30
9	북가좌동 100 번지의 3 개소 "	북가좌동 103, 425, 115	'87. 6. 10
10	연희동 129 의 1-130 의 14 " "	연희동 67, 190, 189, 129, 131	'87. 6. 30
11	중경로 3 가 8 번지의 3 개소 "	중경로 113, 54, 3, 28, 8	'87. 6. 30
12	창천동 18 번지 "	창천동 18, 13	'87. 5. 30
13	현저동 570 의 2 개소 "	현저동 570, 518, 148	'87. 6. 30
14	북아현동 148 의 6 개소	북아현동 160, 148, 137, 55, 3, 1, 180	'87. 6. 30
16	북아현동 240 의 37-220 의 1 간 도로정비공사	북아현동 240 의 37-237 와 92 216 의 63-216 의 9	'87. 5. 30
17	홍계 3 동 278-279 간의 1 건 도로포장공사	홍계동 278-279 연희동 51	'87. 5. 30
18	북가좌동 304 의 1-304 의 10 의 2 개소 도로정비공사	북가좌동 304 의 1-304 의 10 남가좌동 322 의 1-322 의 20	'87. 6. 23
19	대신국교주변 도로포장공사	대현동 45 의 10-67 의 3	'87. 5. 30
20	남가좌동 175 의 48 의 1 건 하수도공사	남가좌동 175	'87. 6. 30

인가번호	공 사 명	위 치	사용개시연월일
21	남가좌동 354 주위 하수도공사	남가좌동 354	'87. 6. 30
22	남가좌동 164 의 53-164 의 1 의 4 "	남가좌동 260, 240, 155, 132	'87. 6. 30
23	홍은동 441 의 1 개소 도로정비	홍은동 441, 450	'87. 6. 30
24	연희동 128 의 2 - 산 79 의 11 의 1 개소 하수도공사	연희동 433, 138	'87. 6. 30
25	홍제동 308 의 17-308 의 78 "	홍제동 308, 312	'87. 6. 30
26	북가좌동 136 의 1 개소 및 124 주위 하수도공사	북가좌동 119, 124, 126, 136	'87. 6. 30
36.40	홍은동 402 번지의 3 개소 "	홍은동 402 의 3 개소	'87. 4. 30
41	현저동 899 의 3 개소 "	현저동 899 의 3 개소	"
42	북가좌동 283 의 4 개소 "	북가좌동 283 의 4 개소	"
43	연희동 519 의 1 개소 "	연희동 519 의 1 개소	"
44	연희동 143-149 의 35 간의 5 개소 도로정비공사	연희동 143 의 5 개소	"
1	북가좌동 75 의 14-75 의 12 간 도로정비공사	북가좌동 75	"
30	서인중학교 진입로 개설	연희동 128-126	'87. 5. 10
39	남가좌동 275 의 5 개소 도로정비공사	남가좌동 275 의 5 개소	'87. 4. 30
46	연희동 200 번지 하수도공사	연희동 200	"

◎서울특별시공고 제 495 호

윤치로 2가구역 제 8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전설부고시 제 257 호 (78. 9. 5) 로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923 호 (86. 12. 23) 로 사업시행인가된 윤치로 2가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8 호 (87. 5. 28) 로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이삼영의 2 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동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인가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87. 8. 14

서울특별시

가.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1) 재개발사업의 명칭	을지로 2가구역 제 6지구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시행구역	중구 삼각동 34번지의 14필지	중구 삼각동 34번지의 15필지
3) 시행면적	1,799.3㎡	변경없음
4) 시행자	이삼영 (대표), 이용주, 송춘자	"
5) 주된사무소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36의 2 여의도백화점 빌딩 1132호	중구 삼각동 103-3
6) 시행기간	86.12.23 ~ 88.12.31	86.12.23 ~ 89.12.31
7) 건축개요		
· 대지면적	1,389.9㎡	변경없음
· 건축면적	591.7㎡ (42.57%)	555.85㎡ (39.99%)
· 연 면 적	13,985.2㎡ (669.34%)	13,868.31㎡ (637.87%)
· 층 수	지상 18층, 지하 5층	변경없음
· 주 용 도	업무 및 판매시설	변경없음
8) 사업시행계획서: 공람장소 비치도 서와 같음		<p>◎서울특별시공고 제 497 호</p> <p>전기공사업체 영업정지 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7조 2항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등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1987. 8. 14 서울특별시 장</p>
9) 규약: 공람장소에 비치한 규약과 같음		
가. 공람기간: '87.8 ~ '87.9 나. 공람장소: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사항	영업정지
2-249	대화전기공사	중구오장동 139-10	이창수	전기공사업법 제7조2항(면허기준미달)	영업정지 90일	'87. 7. 29 '87. 10. 26

◎서울특별시공고제 500 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조례 제 2093 호 (86.3.17)에 의거 신설된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서울특

1987. 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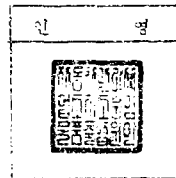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상

1. 직인등록조서 : 별첨

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 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조등록하고 동 규칙 제 11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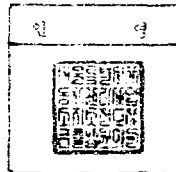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제 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  
 직 명 문임불물출납원  
 사용개시일 1987. 8.



직 인 등 록 조 서

회 제 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  
 직 명 전도자출납원  
 사용개시일 1987. 8.



**구 공 고**

**강서구청공고제 60 호**

특성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규정

및 사후관리 취급요령에 의거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 8.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다 음

지정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조 치 내 역	비 고
제 140 호	홍국 설비	화곡동 29-27	송재동	무단이전	지 정 취 소	
제 240 호	대 화 설비	" 987-7	백영수	무단폐업및이전	"	
제 224 호	대봉건설(주)	신정동 902-12	강재호	"	"	
제 232 호	대 성 설비	목 동 770-4	염영호	"	"	
제 174 호	화성기영(주)	신월동 205-58	임재홍	"	"	
제 189 호	삼양보일러	화곡동 312-49	신창기	"	"	
제 167 호	안 건 설비	방화동 249-91	고봉준	기준미달	영업정지 1월 (87.7.28-8.27)	

**예 규**

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건립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 8. 14

서울특별시장 범 보 현

**◎ 서울특별시예규제 488 호**

동상, 기념비건립기준에관한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공원, 녹

기대중에 역사적 인물이나 사물에 관한 동상이나 기념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원, 녹지대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등이 동상이나 기념비를 영구히 설치할 경우에 적용된다. 단, 순수한 창작 미술작품의 전시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동상이나 기념비의 설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수 : 위원장, 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 등 25명 내외로 한다.
2. 구 성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은 사학, 언론, 문학, 예술, 공헌, 환경설계, 건축등 각분야에 종사하는 저명덕망있는 자를 선정, 위촉하며 당연직은 올림픽준비단장, 환경녹지국장, 시정연구관, 올림픽기획관으로 하되 위촉직은 운영시마다 별도로 구성한다.
3. 운 영 : 년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동상·기념비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설치하고자하는 대상의 인물이나 사건의 고충 및 사료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건립여부, 규모, 위치 등에 관한 사항

③ 동상·기념비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동상·기념비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둘수 있다.

제 4 조 (선정 및 심의절차) ① 동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동상·기념비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건설하고저하는 공공용지 관리부서)에서는 제 3조 규정의 의한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립대상, 목적
2. 건립주체의 주소·성명
3. 건립희망위치와 그 사유
4. 건립기간, 건립재원, 건립규모 (면적, 높이), 건립재료, 상립문장, 건립형태등 건립계획
5. 설치대상 인물이나 사건의 요약 및 세부내용
6. 건립작가명 및 활동경력
7. 사무관리계획서 등

1. 건립대상, 목적
2. 건립주체의 주소·성명
3. 건립희망위치와 그 사유
4. 건립기간, 건립재원, 건립규모 (면적, 높이), 건립재료, 상립문장, 건립형태등 건립계획
5. 설치대상 인물이나 사건의 요약 및 세부내용
6. 건립작가명 및 활동경력
7. 사무관리계획서 등

②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의에서는 동상·기념비 설치계획서를 검토하여 건립처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설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립위치, 건립규모, 건립기간 등 제반 건립계획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선정기준) ① 동상·기념비자문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선정한다.

1. 국가와 민족의 흥성·발전에 천차하게 기여한 사람(역사성)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인물이나 사실  
나. 독립운동의 정신적 줄기가 된 인물이나 사실  
다. 의병·의열사 반공투사
2. 대상인물이나 사실이 국민의 교양증진과 사회 교육적인 사항(교육성)
3.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에 위어난 업적과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문화, 예술, 학문준중)
4. 기타 국가와 민족의 이데올로기적 부합되는 인물이나 사건
5. 대상인물이나 사실이 다수의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사람(보편성)  
①대상인물이나 사실은 이미 역사적 자료나 교증 또는 학문적비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역사적평가가 정립된 사항이어야 한다.

제 6 조 (분야별 현명유지) 설치하고자 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에 대한 실의는 다음사항에 대한 현명을 고려하여 실의하여야 한다.

1. 삼국시대이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말이후의 시대별 행정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대상분야별 행정
3. 설치하고자 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규모에 대한 현명

제 7 조 (위치선정) 설치하고자 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위치를 실의한정할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요명, 동명, 출생지, 묘소, 활동이나 사실의 근거지등 연교성
2. 설치하고자 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성격과 공헌시기대의 성격
3. 설치하고자 하는 공헌이나 공적대의 파악화 정도
4. 독립운동에 관련된 동상이나 기념비는 가능한한 독립기념관등으로 유도

제 8 조 (설치부지면적) ①설치하고자 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는 다음규모 범위내에서 설치하되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부지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1. 동상 : 부지면적 16㎡이하
2. 기념비 : 탑·형 - 부지면적 16㎡이하  
비문형 - 부지면적 16㎡

②기설치되어 있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기존 동상이나 기념비의 규모,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개의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설치제작시 고려사항) ①설치하고자 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에 사용하려는 재료는 공원·녹지대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품위있고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형태, 문장의 내용은 충분한 역사적 고증으로 확인된 사항이어야 한다.

③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는 작품성, 조형성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제 10조 (허가 및 사후관리) ①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의 의견을 기초로하여 공헌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하되 허가 시에는 서울특별시 예술위원회에 동상, 기념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작품성과 조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상, 기념비를 건립할 주체는 동상, 기념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여부에도 불구하고 장소, 보수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개정안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 업무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7. 8. 14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 서울특별시예규 제 489 호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 시행세칙 제 26 조 제 2 항중 "연 2 할"을 "연 1 할 3 분"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우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체한 다금이 과한 적용 연체이자율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 기간은 종전의 규정액 의한다

현	개 정 안
제 25 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과 기간) ①형 제 69 조 및 규칙 제 136 조의 2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	제 25 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과 기간)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경	안
<p>이 전부로 분납하게 하는 경우 계약시 보증금 1할과 매각대금의 2할 이상을 1회 불입금으로 하고 잔액은 5년내에 균등하게 하여 규칙 제 136 조의 2에 규정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되 계약보증금은 최종회 불입금 납부시 대채 충당한다.</p> <p>② 매각대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연 2할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다. 내부요를 전제하였을때도 또한 같다.</p>		<p>②.....</p> <p>.....연 1할 9푼의.....</p> <p>.....</p> <p style="text-align: center;">부</p> <p style="text-align: center;">칙</p> <p>제 1 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 (경과규정)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두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체한 대금에 대한 적용연 계약자율은 이 예규 시행일이전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사 령

<p>① 1987년 8월 7일자</p>		<p>령제 250 호</p>	
<p>성 명</p>	<p>발 령 사 항</p>	<p>현 부 서</p>	<p>직 급</p>
<p>한 재 일</p>	<p>경기공업개발대학 전출을 명함</p>	<p>종 로 구</p>	<p>지방행정서기</p>
<p>② 1987년 8월 22일자</p>		<p>령제 251 호</p>	
<p>성 명</p>	<p>발 령 사 항</p>	<p>현 부 서</p>	<p>직 급</p>
<p>류 경 기</p>	<p>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p>	<p>전 자 계 산 소</p>	<p>지방행정사무원</p>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의규정에의하여유직을명함		
◎ 1987년 8월 5일자			명계 252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노운	부지율명함	종로구	기방건축기원
			명계 253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윤진규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87.8.5~'88.7.31)	서대문구보검소	지방약사
정영수	"	영등포구보검소	"
◎ 1987년 8월 8일자			명계 254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원심	원예의하여그직을명함	구로부내복지관	지방행정주사
◎ 1987년 8월 12일자			명계 256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장성구	원예의하여그직을명함	남부근로청소년회	지방행정직 관/급상당
서울특별시			